

-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2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2월 12일

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구미도시계획시설(도산공원)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원시설 면적의 변경
 - 574,000㎡ → 572,500㎡ (감1,500㎡)

라. 변경사유

- 도산3호공원 인접도로인 대로3-8호선(B = 25M)의 선형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일부 조정이며 원호~봉곡간 도로를 연결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민원을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변경 결정함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'90. 10. 3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산3호 근린공원은 인근 도량2동의 파크맨션과 3주공APT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낮은 야산임. .
- 원호~봉곡간 도로개설 선형변경에 따른 도산3호 공원의 시설면적 감소는 공원 전체면적574,000㎡의 0.26%에 불과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추후 조성될 공원시설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원호,도량,봉곡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호~봉곡간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는 시설변경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찬성 의결서 채택 (별지)